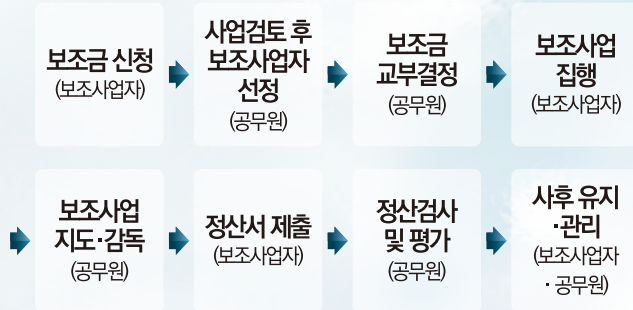




보조금 투명운영 위험도(危險圖)

정부지원 보조사업 업무처리 흐름도 및 보조사업 주체들의 보조금 투명운영을 저해하는 사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그림

☞ 보조사업 업무처리 흐름도



☞ 보조금 투명운영 저해행위

보조사업자	감독공무원	제3자 (유력자·일반인)
- 무자격, 허위 보조사업 신청 - 허위 자부담 행위 - 보조금을 횡령·편취하는 행위 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 담보 제공·처분	- 보조사업자에게 특혜 제공·선정 - 보조사업자 지도·감독·정산 소홀 - 보조사업자로부터 금품·향응 등 수수 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관리 소홀	- 특정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이권 개입, 압력행사, 알선·청탁 등 행위 - 보조사업자의 부타으로 명의 대여,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

국민세금 부담가중

국가재원 낭비초래

국민이 행복한 변화가
시작됩니다.

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하기

- ▶ 전화 : 국번없이 1398, 110
- ▶ 팩스 : (02)360-3551
- ▶ 홈페이지 : <http://www.acrc.go.kr>
- ▶ 주소 : (120-705)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
임광빌딩 신관 1층 (부패·공익침해 신고센터)

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하신 분에 대해 **비밀보장·신분보장·신변보호·책임감면**을 통해 철저히 보호하여 드리며, 국고환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**최대 20억 원의 보상금** 또는 **2억 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**을 지급합니다.

희망의 새시대



정부지원 보조금

투명운영 길라잡이



정부지원 보조금 투명운영

길라잡이



구체적 사례 살펴보기

정부지원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보조사업 단계별로 보조사업자, 감독공무원 등이 유의·금지해야 할 일

☞ 보조사업자가 유의·금지해야 할 일

사례1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

- ▶ 보조사업 신청자격,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
- ▶ 이미 개발된 기술, 타사의 개발기술을 일부 변경하거나 단순한 기능·사양만 추가해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신청하는 행위

사례2 보조금 집행단계에서

- ▶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, 자부담을 부풀리는 행위
- ▶ 채무변제, 부동산 구입 등 사적 용도로 보조금 사용 행위
- ▶ 허위 견적서·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나 물품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행위
- ▶ 보조금 회계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전용통장·카드로 집행하지 않은 행위
- ▶ 그밖에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·편취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

사례3 보조금 집행 이후 단계에서

- ▶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의 임의 담보설정, 처분 등을 하는 행위
- ▶ 보조금을 집행한 기업을 고의로 도산시켜 보조사업 중단 또는 환수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

☞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(벌칙), 제41조(벌칙)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**5년 이하의 징역** 또는 **3천만 원 이하의 벌금**,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**3년 이하의 징역** 또는 **2천만 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.

☞ 감독공무원이 유의·금지해야 할 일

사례4 보조사업자 선정단계에서

- ▶ 특정 개인·단체에 유사·중복 지원하는 행위
- ▶ 보조사업자와 사전 결탁 후 보조사업 공고·설명회 개최, 사업계획서·소요예산 검토 및 선정·심의 절차 등 없이 특혜 선정하는 행위

사례5 보조사업 지도·감독단계에서

- ▶ 보조사업 진척도, 현장 확인 등 없이 보조금을 과다 교부하는 행위
- ▶ 보조사업자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보조사업자의 허위 실적 보고를 묵인한 후 금품·향음 등을 받는 행위
- ▶ 현금 집행·간이계산서의 증빙서류 제한, 보조금 전용통장·신용카드 개설 후 계좌이체·신용카드로 보조금 투명 집행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
- ▶ 그밖에 보조금 회계계정과 보조사업자의 고유 사업회계 계정의 분리집행 등을 지도·감독하지 않는 행위

사례6 보조금 검사·정산단계에서

- ▶ 자부담 여부, 사업계획과 보조금 집행비목 대조, 보조사업 기간 외(개시 전 또는 종료 후) 보조금 집행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
- 계약서, 착공신고서, 준공서류와 실제 물품 구입, 인건비 집행 및 공사 준공내역 등을 검사하지 않고 정산을 승인하는 행위
- 보조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출내역 및 지출서류에 첨부된 세금 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을 승인하는 행위
- 그밖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, 이자 등의 소유 주체에 대한 검토 없이 정산을 승인하는 행위

사례7 보조금 정산 후 단계에서

- ▶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관리 상태,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
- ▶ 보조금 편취, 횡령 등에 따른 고발, 환수조치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

☞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(벌칙)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실을 공무원이 알면서도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**5년 이하의 징역** 또는 **3천만 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.

☞ 제3자(유력자·일반인)가 유의·금지해야 할 일

사례8 보조사업자 선정단계에서

- ▶ 이권개입, 압력행사 및 알선·청탁 등으로 보조사업자 특혜 선정을 유도하는 행위

사례9 보조금 집행단계에서

- ▶ 보조사업자의 부탁으로 명의 대여,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보조금 횡령·편취를 방조하거나 공모하는 행위